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청주지방검찰청**  
**충주지청**  
공보담당관 검사 정초롱  
전화 043-841-4345/ 팩스 043-841-4603

**보도자료**  
2022. 11. 24.(목)

## 제 목 **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 사건 수사 결과**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○ 금일(11. 24.)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허위로 작성한 수사기록을 이용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대상자를 체포·구속하고 그 공적으로 특별승진한 경찰관을 직권남용감금죄 등으로 기소하였음

## 1 피고인

- A○○(51세, 경찰공무원)  
※ 본건 피해자(피고인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)를 검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하였음

## 2 공소사실 요지

- '21. 4. 16. 피해자 주거지에 '○○경찰서로 연락바란다'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도,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하여 '메모지를 게첨하고 소재수사 마쳤다'는 수사보고서를 작성, 기록에 편철[허위공문서작성, 동행사]
- '21. 4. 18. ~ 4. 19. 피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, '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'는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, 수사기록에 편철[허위공문서작성, 동행사]

- '21. 5. 14.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수사기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체포·구속[직권남용감금]

### 3 수사결과 및 향후계획

- 수사 절차에서 통상적인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 방식은 아래와 같음
    -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피의자에게 발송하고, 출석요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(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)
    - 피의자의 최종주거지, 주소, 배회처, 가족, 형제자매,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, 국외 출국 여부, 수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함(경찰수사규칙 제99조)
  - 수사 결과,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출석요구나 소재수사 없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, 그 후 해당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하였음
    - 수사기관은 수사 시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실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, 불구속 구공판하였음
- ※ 피해자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
-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임 ☑